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51
----------	------

발의연월일 : 2023. 2. 27.

발의의원 : 김은영 의원,
전홍배 의원, 신달호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로 나누어 규정 및 집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정책연구용역, 의원정책개발비, 연구경비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
- 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원 상한에 관한 단서를 신설함 (안 제3조)
- 라.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 인원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 마. 연구경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13조)
- 바. 개정 관련 조문에 따라 별지 서식 내용을 정비함 (안 [별지] 서식 제2·5·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으로, “있는데”를 “있는 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이를 위한 의정활동의 활성화 등을 목적(이하 본 조에서 “연구단체의 목적”이라 한다)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달성군의회사무국(이하 “군의회사무국”이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연구단체가 연구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말한다.
4. “의원정책개발비”란 군의회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5. “연구경비”란 연구단체가 그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원되는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의원 정수의 과반을 넘지 못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하고, “계획서”를 “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의원연구단체”를 “의원 연구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의회”를 “포함하여 구성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연구 등 활동비”를 “연구경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간사”를 “간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9조 중 “군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 등을 위한 활동비”를 “연구경비”로 하고, “있되,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연간 지원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있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원정책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연구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한다.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연구활동비) ① 연구활동비는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드는 경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수당, 전문가 자문경비, 자료 발간비
3.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연간 지원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제13조(연구경비 등 집행 제한) ① 연구단체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에 따라 승인 받은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경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경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 중 “연구 등 활동비”를 “연구경비”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연구 등 활동비 를”을 “연구경비 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연구 활동비”를 “연구경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의원들이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이를 위한 의정활동의 활성화 등을 목적(이하 본조에서 “연구단체의 목적”이라 한다)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군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u></p> <p>2. <u>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연구단체가 연구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 ----- ----- <u>있</u> <u>데</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이를 위한 의정활동의 활성화 등을 목적(이하 본 조에서 “연구단체의 목적”이라 한다)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달성군의회사무국(이하 “군의회사무국”이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u></p> <p>2. <u>“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연구단체가 연구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u></p>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 ① 대표자가 연구단체를 군의회사무국에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제2호 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등록된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말한다.

4. “의원정책개발비”란 군의회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5. “연구경비”란 연구단체가 그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원되는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
----- 구성하되, 의원 정수의 과반을 넘지 못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 ① -----
----- 등록신청서 ----- 계획서 -----.

② -----

----- 별지 제3호서식 -----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의회의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군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군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연구단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1. 2. (생략)
- 3. 연구 등 활동비 지원 및 회수
- 4. (생략)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

_____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 각 호 _____ 의원 연구단체 _____ .

② _____ 포함하여 구성하되, _____ .

③ _____ 위원 _____ .

④ 위원 _____ .

제6조(위원회의 기능) _____ .

- 1. 2. (현행과 같음)
- 3. 연구경비 _____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

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생략)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연구단체 가입) 군의회 의원은 제4조에 따라 등록(변경)된 연구단체 중 1개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의장은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 의정운영공동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 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되,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연간 지원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연구 등 활동비 집행 등 제한) ① 연구단체는 제10조에 따라 지원 받은 연구 등 활동비 범위에서 그 연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간사_____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_____

재적위원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단체 가입) 의원_____

제10조(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_____

연구경비

_____ 있다.

제11조(의원정책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연구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한다. 계약

에게 자문 등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나, 그 연구 등에 관한 전부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단체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에 따라 승인 받은 연구 등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등 활동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등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등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의 연구 등 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신 설>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12조(연구활동비) ① 연구활동비는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드는 경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수당, 전문가 자문경비, 자료 발간비
3.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 설>

제12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 등 활동비 지원을 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생 략)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제10조에 따라 연구 등 활동비

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연간 지원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제13조(연구경비 등 집행 제한) ①

연구단체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에 따라 승인 받은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경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경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경비

— 별지 제5호서식 —

_____.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6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_____ 연구경비를 _____

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 종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5조 (생략)

_____.

② 제1항_____
연구경비 _____
_____.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주요내용 요약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따로 붙임」	
연구경비 분류	<input type="checkbox"/> 의원정책개발비 <input type="checkbox"/> 연구활동비	
소요경비	총액	금 원(W)
	세부내역	※ 「따로 붙임」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3조 참조

붙임 : 연구활동 방법 및 세부계획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당 초	주 제	
		목 적	
	변 경	주 제	
		목 적	
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			
연구경비	총 액	금	원(W)
	산출내역	※ 「따로 붙임」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3조 참조

- 붙임 : 1.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2. 연구경비 지출 계획 변경(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추진사항 결과보고		(보고서 별첨)	
연구 경비	수령액	금	원(W)
	집행액	금	원(W)
	잔 액	금	원(W)
특기사항		(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첨부)	

- 붙임 1. 연구활동(중간, 최종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경비 세부 사용 내역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 활동(중간,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